

북한의 장애인체육 현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가람(서울대학교)·이용호(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체육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추진하면서 북한 장애인 관련 논문과 북한에서 발간되어 유입되는 각종 문헌과 법률을 수집하였다. 또한, 북한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체육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남한에 거주 중인 북한 이탈주민 9명을 모집하여 그룹면담을 시행하였다. 문헌자료와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와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check)’를 통해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북한의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자 보호법’의 제정 시기가 남한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법률의 구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도구로 체육이 사용되던 김일성 시기보다는 체육의 대중화를 강조하던 김정일 체제에서 조금씩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서 ‘체육강국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선전도구로 장애인 체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장애인들의 체육참여실태는 매우 절망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은 영예군인들에게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재일 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대다수 장애인의 체육참여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다. 넷째, 북한에서 열리는 학생체육대회들이 비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장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체육교사의 관

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학교 체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주제어: 북한 체육, 장애인 체육, 특수체육

1. 서론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흘렀다. 정치 이념의 갈등으로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며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였다. 현 정부에서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 통일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 법무부에서는 통일 법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북한의 법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통계청은 북한 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통일 시에 발생할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 문제도 미리 준비되어야 할 주요한 영역이다. 2002년 남한에 등록된 장애 인구가 129만 4,254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51만 1,05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²⁾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

1) 안상권·홍정숙,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3호(2016), 237~261쪽.

2) 장애인고용공단, 『한 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

라 남한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남한정부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정의 노력과는 반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깊게 남한 사회 속에 뿌리박혀 있다. 통계청 보도 자료를 보면 교육 및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65.8%로 나타났다.³⁾ 이는 여전히 장애에 대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의 장애인 실태는 위에서 설명한 남한의 상황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상화⁴⁾는 북한 사회에서 장애는 북한의 자칭 ‘무결점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수치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도심외곽이나 지방으로 분리하여 격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참한 북한 장애인의 실태를 고발하였다. 1999년 당시 북한 조선장애인 지원협회는 북한 인구의 3.4%인 약 76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의 장애인이 전체국민의 10~2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조선장애인 지원협회가 발표한 북한장애인 인구통계 자료는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장애인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북한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원, 2017).

3)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4) 정상화, “남북 장애인 교류를 위하여,” 『월간 북한』, 12월 호(2013).

5) 김석향,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

인식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통일연구원에서 2011년 수행한 북한 이탈 주민 면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하였다. 2012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이 가운데 6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⁶⁾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 북한사회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지 못하는 ‘결점의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⁷⁾

남한과 북한사회에서 장애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통일한국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장애를 성숙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분단된 두 사회에서 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에서의 장애인 사회통합문제는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따라서, 다가올 통일 한국의 장애인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복지 등의 각 분야에서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체육 활동은 장애인에게 치료와 재활이라는 장애 극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에게 체육 활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하나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의 권리이다. 또한,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육은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88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장애인체육 관련 기구 신설, 장애인 관련 법률 재개정 등과 같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토대가 다져지기도 하였다.⁸⁾ 최종

구학회』, 1호(2011), 85~110쪽.

6)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2호(2013), 1~28쪽.

7) 박영호·김수암·이금순·홍우택, 『북한인권백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2010).

권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통합사회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며 체육 활동이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낙인, 고정관념, 편견의 문제를 서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즉,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는 장애인의 궁극적인 사회 통합을 돕는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으로서 장애인 체육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학술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의 장애인체육 현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장애인체육 관련 자료의 양은 비교적 풍부한 데 비해 북한자료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북한 관련 자료가 그렇듯이 직접적인 북한의 장애인체육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연구환경의 제한으로 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도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장애인 체육의 밑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연구물이 매우 절실하다는 학술적 요구를 인식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장애인체육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정책 및 법령에서 나타난 장애인 체육의 성격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
- 8) 조창욱·구교만·오아라, “통합생활체육대회 참여 비장애인의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 및 통합체육 태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6호(2010), 635~642쪽.
 9) 최승권, “장애인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가치,” 『특수체육연구』, 제2호(2004), 1~11쪽.

북한의 장애인체육 활동을 다루는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 제공 이외에도 현재 분단상황에서 다음의 측면에서 실제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체육 활동이 특정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장애 주민의 체육 활동 현황을 이해해봄으로써 북한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체육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교류는 남북관계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일반체육을 넘어 장애인체육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장애인체육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다.

2. 연구방법

북한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장애인의 삶을 참여관찰 하여 일차적인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분단된 현실 속에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에 의존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차 자료는 탈북자 9명의 증언과 문헌조사를 통해 획득하였다. 문헌자료는 구체적으로 남한에서 출간한 북한의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물 및 언론보도 자료, 북한 이탈주민이 인식하는 북한장애인의 인권 현황에 관한 연구물 등의 간접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 중 『조선대백과사전』, 북한법률(헌법, 교육법, 사회주의 교육체제, 조선장애자

보호법), 『로동신문』(1994~2014) 등이 주요하게 분석에 활용되었다.

1)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¹⁰⁾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진실성 점검 요소 중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와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check)’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특수체육 전공 교수 1명, 박사과정 1명, 법학 전문석사 1명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연구 책임자는 동료 연구원들에게 분석에 사용될 녹취록을 제공하고 Krueger와 Casey¹¹⁾가 제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주제와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료 연구자들 사이에 공통으로 나타난 주제와 범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과를 합의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검토받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 결과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최근의 북한 장애인체육 관련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탈북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 9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북한에

10) Yvonna S. Lincoln and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5).

11) Richard A. Krueger and Mary Casey, *A.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4).

<표 1> 연구참여자

참여자	성별	출생연도	출신	재복경력	탈복연도
1	남	1980	함경도	체육교사	2010
2	여	1970	함경북도	고등중학교 졸업, 상인	2015
3	여	1993	양강도	전문학교 졸업	2015
4	여	1965	양강도	대학교 졸업, 유치원 교사	2015
5	여	1984	함경북도	소프트볼 선수, 여군	2013
6	여	1968	함경북도	예술계 종사	2014
7	여	1978	양강도	여군	2007
8	여	1990	양강도	간호사	2014
9	남	1981	양강도	대학 졸업	2015

서 거주 중인 장애인의 생활과 체육참여 실태라는 다소 포괄적인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능한 장애인의 삶을 근거리에서 관찰한 경험과 체육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려 했으나 모집과정에서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탈북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체육 관련 경력자 혹은 장애인을 지인으로 두고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을 우선 모집하되 그 밖에도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양한 경력의 탈북자 중 장애인 복지 또는 체육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모집은 A 대학교 통일연구소에 등록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에 연구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북한 장애인과 특수체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 2> 인터뷰 질문 내용

주요 인터뷰 문항

- 재북 당시 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 재북 당시 지인 중에 장애인이 계신가요?
-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북한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 북한 장애인들은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장애인의 체육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 장애인스포츠클럽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 북한 장애인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집하기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에 그룹 내 참여자들 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자료나 주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¹²⁾ 따라서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한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자료가 유용한 것일 때 주제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³⁾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9명을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가능 일정을 고려하여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당 1회 1시간 30분~2시간 정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지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12) David L. Morgan,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2(1996), pp.129~152.

13) Edward F. Fern, "Focus groups interview,"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1983), pp.122~216.

문서로 전사하였다. 문서를 지속적으로 숙독하면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면담에 사용된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3. 결과 및 논의

1) 북한 장애인 체육의 특성

(1) ‘장애자 보호법’에 나타난 장애인 체육

북한 내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기초적인 법률은 2003년에 공포된 후 2013년 7월 3일 서명한 장애인권리협약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3년에 개정된 ‘장애자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¹⁴⁾ 북한의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인 틀과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 주는 이 법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교육, 복지, 노동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애자 보호법’의 제정은 북한에서도 최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근거라 할 수 있다. 최근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후천적 장애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자 보호법’의 제정은 북한 내에도 상당수의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북한이 당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장애자 보호법’이 남한의 ‘특수교육 진흥법’, ‘장애인 복지법’ 등의 성격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법률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에서 명시

14)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통일문제연구』, 2호(2013), 1~28쪽.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법률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장애인체육 정책 방향의 기초를 가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장애자 보호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중 장애인 체육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장애자 보호법’ 내용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북한 장애인체육의 성격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장애자 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데 이바지한다’는 ‘제1장 1조’를 기초로 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자 보호법’은 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3장 ‘장애자의 교육’, 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5장 ‘장애자의 로동’, 6장 ‘장애자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에 대한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체육에 관한 내용은 이중 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에 매우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다.

‘장애자 문화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4장의 내용은 장애인의 전반적인 문화생활에 관해 규정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장에서는 장애인의 체육과 문예 기능에 한정하여 총 6개 조항을 규정하였다. 문화생활이라는 폭넓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체육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삶에서 체육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6개 조항은 장애인의 체육을 위한 체육 지도 기관과 장애인의 문화정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지도기관 및 장애인의 문예활동을 출판하기 위한 출판담당기관에 관한 규정이다. 6개의 조항에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한 2개의 조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장애자의 문화생활은 장애자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해야 한다(장애자 보호법 4장 제24조).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체육은 장애자의 자립적 활동능력을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장애자 보호법 4장 제25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당국에서는 체육을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문화생활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서 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체육이 장애인들의 여가생활로 선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장애인 체육의 심동적 영역뿐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11월 북한당국에서는 ‘장애자 보호법’을 10년 만에 개정하면서 장애인들의 체육 및 문화 정서 시설의 이용 강화를 위해 장애인이 체육 및 문화 정서 생활기지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내용을 구체화였다. 또한, 개정 이전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장애자체육협회’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사후적으로 명시하였다.

장애자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 체육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장애자 보호법 개정 조문 4장 제25조).

시설과 설비를 원만히 갖추어주며 장애자들이 체육 및 문화 정서 생활
기지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장애인 보호법 개정 조문
4장 제27조).

북한의 ‘장애인 보호법’에서 체육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법률의 구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도,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는 회의적인 시선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2개 조항이 장애인 체육과 관련되어 있지만, 관련 조항이
다른 조항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북한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두 개의 조항 모두 선언적인 법률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고 추상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법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 법률을 집
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명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
항에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한이 관련 법률
을 세분화하여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에 대한 안정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장애인 보호법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이
라는 조항에 체육과 문예활동이 구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
어 북한 당국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
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법의식 수준과 성문법보다 노동당 규약 및 최고지도자의 지침(‘김일성
교사’, ‘김정일 말씀’, ‘김정은 지시’)을 중시하는 북한의 비정상적인 특성
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⁵⁾

15)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11).

남한에서는 효력발생시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20일 경과설과 공포시설이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20일 경과설은 법률이 공포된 이후 20일이 지나서 해당 법률이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입장이며 공포시설은 법률이 공포된 날을 기점으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¹⁶⁾ 이러한 남한의 법률 관점에서 보면 ‘장애자 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법률이 처음 제기되어 공포된 2003년 6월 18일이나 2003년 7월 8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¹⁷⁾ 따라서 장애인 체육 관련 제도에 관한 실제적인 정비도 그 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법체계가 공포시설과 20일 경과설 또는 제3의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인체육제도의 실제적 정비의 시기를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장애자 보호법’이 2003년에 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정비는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한다. 남한의 장애인 체육은 1988년 장애인 패럴림픽을 개최한 이후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측면이 정비되면서 장애인 체육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 체육 발전시기 차이는 통일한국의 장애인체육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애자 보호법’을 통해 표면적으로라도 북한당국이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인식은 훗날 통일된 한국에서 진취적인 장애인 체육정책을 수

16) 권영성, 『헌법학 개론』(서울: 법문사, 2005).

17) 김동일·이태수·최종근, “북한의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장애자 보호법의 내용과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2호(2005), 149~165쪽.

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게 체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남한과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는 없기에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한다면 훗날 통일 한국에서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북한의 체육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장애인 체육

북한의 체육정책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시대순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김일성은 체육 정책을 활용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고화하였다. 1946년 김일성은 1946년 10월 6일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한 연설에서 ‘체육이란 특권계급의 놀음거리로 되었거나 일본 제국 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복무하기 위한 훈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체육에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는 체육이 부르주아와 같은 특정 계층만의 유희 수단으로 전락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체육은 사회주의 체제강화와 자주독립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¹⁸⁾ 즉, 체육이 인민들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일성 시기에 체육은 주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노동력과 국방력 그리고 체제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체육을 사용해 왔다.¹⁹⁾ 김일성 시대에 노동력과 국방력을 상실한 장애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 비주류로 몰려날 수밖에 없었다.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체육 활동을 제공한다는 것은 당시 분위기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김일성 집권 시기에 북측 장애인 선수단이 패럴림픽에 참여했

18)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3호 (2015), 145~161쪽.

19) 위의 글, 148쪽.

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²⁰⁾ 엘리트 체육을 체제 선전의 주요 도구로 활용하던 김일성이 엘리트장애인선수들을 양성해 패럴림픽에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는 장애인들의 존재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자신의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²¹⁾

주체사상의 후계자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자신의 입지를 다진 김정일은 이후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김일성시대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시대에도 체육은 북한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선전 도구였다. 김일성 시대의 ‘주체 체육’을 근간으로 체육의 대중화와 엘리트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였지만, 김정일은 집권 기간 내내 있었던 경제난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발생한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로 대표되는 계획경제가 붕괴되었고,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은 북한의 개인주의와 시장화를 촉진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김정일 정권에서는 『로동신문』을 통해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우리당이 일관 되게 견지하는 중요방침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것이다. 전체 인민이 국방 체육을 위주로 하는 대중체육을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전략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0) 이창희·박범영, “융합을 활용한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호(2018), 133~141쪽.

21) 『데일리NK』, 2018년 1월 23일; 김정민, “김정민의 길따라 발따라: 북한의 장애인, 인간대접 못 받는다,” 『북한』, 10월 호(1994), 121~133쪽.

22) 『로동신문』, 1994년 11월 10일.

우리가 말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은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와 경제의 강국일 뿐만 아니라 체육의 강국이다. 로동과 국방을 위하여 내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누구나 다 체육을 생활화 대중화 하여야 한다.²³⁾

체육의 대중화를 강조하던 김정일 체제에서는 조금씩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정권시대인 2003년에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애자 보호법’이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체육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남한 정부와의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남한의 장애인 체육회와 지속적인 남북한 체육 교류를 위한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2007년 4월에는 대한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복과 축구공 등의 4천만 원 상당의 장애인체육 용품을 지원하였고 5월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표들이 조선장애자 보호연맹의 초청으로 방북해 북측 관계자를 만나 남북 장애인 스포츠 교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²⁴⁾ 남한과의 교류가 없었던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면 김정일 시대의 장애인 체육은 남한과의 교류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일성의 건강악화로 급하게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함과 동시에 북한 내 일인자로 권력을 세습받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걸쳐 권력세습을 받았던 김정은의 지지기반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은 이러한 취약한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 사상을 강조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제시해야

23) 『로동신문』, 1998년 2월 30일.

24) 정상화, “남북 장애인 교류를 위하여,” 103쪽.

했다.²⁵⁾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정은 정권의 체육정책은 자연스럽게 ‘주체체육’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체체육만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시작된 개인주의 흐름을 막고 집단주의 사상을 고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체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바로 ‘체육 강국 건설’이었다. ‘체육 강국 건설’은 매우 급진적 성향의 의미를 띤 체육 정책으로 체육과 대단위 건설 사업을 연결하여 주민들에게 발전된 경제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체육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달성하려는 새로운 체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체육정책을 펼친 이유는 자신의 젊은 이미지를 부각해 북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²⁶⁾

은 나라에 체육 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방침을 관철하여 당의 체육 강국 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야 합니다.²⁷⁾

김정은은 급진적인 체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권침해국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을 적극적

25)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156쪽.

26) 『로동신문』, 2013년 3월 4일.

27) 『로동신문』, 2014년 1월 2일.

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체제가 인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김일성 지도체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또한, 2011년 북한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조선 장애자 보호연맹과 세계 농인 연맹이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북한 청각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보장을 약속했다. 김정일 지도체제였던 2003년에 ‘장애자 보호법’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 보장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면 김정은의 후계 승계가 확실시된 2011년도에는 장애인 관련 연맹들이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체육참여에 대한 정책적 기반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건설 노동자 출신인 ‘림주성’을 북한 최초의 장애인 수영 선수로 출전시키는 등 총 24명의 선수단을 장애인올림픽에 파견함으로써 북한 장애인 정책의 변화를 대외에 알렸다. 이후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과 2016 리우 패럴림픽에 연달아 참여함으로써 북한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김일성 시기에 장애인의 존재를 외부로부터 숨기려 하고 자신들의 체제의 수치로 여겼던 북한이 김정일과 김정은 지도 체제를 거치면서 남한과의 교류 및 체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장애인 체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²⁸⁾ 북한이 런던 패럴림픽 직후인 2013년 7월 3일에 국제 장애인권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패럴림픽 출전은 순수한 장애인체

28) 허정필, “북한 ‘체육 정치’의 전개 과정 연구”(동국대학교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57쪽.

육의 발전을 의미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거세지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북한 장애인 체육의 흐름은 북한의 체육정책 변화 흐름에 긍정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협약이 국내 법률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국제 장애인인권협약은 북한이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행동 이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북한당국은 장애인 체육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조선장애자체육협회’의 주관으로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장애인 운동선수 전용 체육관인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²⁹⁾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실내체육관으로 지하에는 찜질방과 사우나 시설 등이, 1층에는 식당과 찻집, 2층에는 장애인 보장구 전시 및 판매관, 3층에는 탁구장과 체력단련실 등이 자리 잡을 예정이라고 북한 언론매체에서는 전하고 있다.³⁰⁾ 또한, 북한 장애인전용체육관인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을 지역사회 비장애인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에서는 차별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된 진보적인 사회임을 은연중 선전하고 있었다.

북한의 장애인 체육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지도체제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체육정책의 맥락 속에서 그 목적이 규정되어왔다. 최근

29) 『연합뉴스』, 2013년 8월 31일.

30) 『통일뉴스』, 2016년 2월 27일.

김정은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체육 강국 건설’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요구가 더해지면서 북한의 장애인의 체육정책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장애인 체육의 지원과 이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때 부분적으로 경제개혁개방의 움직임을 보여 주었던 것처럼 체육을 통해 개혁개방의 움직임을 보여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³¹⁾

1988년도에 패럴림픽을 개최하고 2011년도에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건립하여 엘리트 장애인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남한에 비해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비교적 늦은 시기부터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엘리트 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남측과 북측의 차이가 있었지만,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보다는 엘리트 스포츠 체육에 초점을 두는 양상으로 장애인 체육을 발전시켜 가는 모습에는 두 진영 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북한 당국이 엘리트 스포츠 이외의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의 기반이 없음을 나타내는 주요 단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 장애인의 삶을 조사한 연구물을 검토해 보았을 때도 북한 장애인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³²⁾ 오히려 해당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들의 삶이 여전히 비참함을

31)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6호(2015), 449~461쪽.

32) 김석향,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85쪽.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장애인 체육 정책은 대다수의 일반 장애인과는 상관없이 엘리트 스포츠에 한정된 정치적 선전용 도구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남한의 장애인체육상황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생활체육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남한의 장애인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를 여러 선진국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지도자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³⁾ 북한 또한 남한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원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이 일반 장애인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2) 북한 장애 주민의 체육참여 실태

(1) 영예군인의 체육참여실태: 장애가 '명예'인 장애인

연구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장애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예군인'과 '그밖에 장애인'이다. 영예군인은 군사 복무 중 당과 군을 위한 일을 하다 몸에 손상을 입은 퇴역군인들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화재 속에서 북한 지도자의 초상화를 꺼내기 위해 화상을 입거나, 군사 훈련 중 부상으로 지체 장애인이 된 영예군인들은 북한 당국에서도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손상된 신체 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지원받고, 연금형태의

33) 김권일·박병도·이철환, “장애인 생활체육 문제점 분석 및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3호(2014), 103~118쪽.

배급을 평생 보장받게 된다. 장애는 곧 당과 군을 위해 충성하다 다친 명예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보다 많은 혜택이 영예군인들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보통 퇴역 후에 북한 전역에 설립된 영예군인 공장이라는 곳에 취업하여 생필품들을 생산하며 생계를 꾸려 나간다. 영예군인들에게는 비교적 질이 좋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영예군인에게 우호적 태도를 견지하는 북한 당국은 ‘장애자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영예군인의 권리를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강화에 이바지한 장애인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한다(장애자 보호법 개정 조문 제7조).

영예군인들은 장애 때문에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혜택 이외에도 영예군인들은 오히려 북한의 일반 주민들 위에 군림하며 불법적으로 돈이나 먹을 것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도 이런 영예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몇몇 주민들은 그런 영예군인들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자신들의 건강한 모습을 반성하기까지 한다. 당과 수령 그리고 군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곧 미덕인 체제에서 자신만 멀쩡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영예군인들의 착취를 묵인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서도 자신들의 선군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영예군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영예군인들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상류층의 지위를 획득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거짓으로 영예군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이러한 영예군인의 모습은 ‘장애’라는 것이 개인의 손상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장애를 구성된 산물로 바라보는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장애는 손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제한이다.³⁴⁾ 이러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영예군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집단이 아니다. 신체적 손상이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영예군인들은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아닌 것이다.

영예군인이 어떤 데서 더 빛이 나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빛이 나타나면 이제 북한은 군인들이 선군 정치잖아요.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나타나면 호랑이 가죽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어떻게 하나면 영예군인이라는 간판을 앞େ다가 세우고. 자기들이 군사복무가 싫어서 손가락을 자르고 생활제대를 한 사람들도 영예군인 배지가 여기 있어요. 메달. 그러니깐 사회에서 자기들이 일을 해도 거짓말로 군복을 입고 다 유통이 되니깐. 그렇게 거짓말 군복을 입고 이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영예군인들이 집계발로 딱 집고 이제 차를 집계발로 막 세우면은 운전기사들이나 사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성한 군인들도 아니에요. 영예군인이예요. 영예군인들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세우고 하니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빛이 난다는 거죠(연구참여자 7).

34)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서울: 집문당, 2009).

북한에서는 영예군인들이 역전 같은 데서 영예군인 배지를 달고 영예군인이라고 해서 야! 내려. 내가 땅에 배를 부치고 조국을 지킬 때 너네는 앉아서 밥이나 편하게 먹던 놈들이. 자리를 하나 내놓으라고. 딱 두들겨 패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예군인 배지를 달고 나와서 두들겨 패도 그렇게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특류군인이나 영예군인 이런 사람들은 북한 조국을 지키다가 이렇게 팔이 꺾이거나 다리가 잘려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동정이 많이 갖었는데. 정말 도와줘야 하겠다. 같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연구참여자 9).

그런 사람들이 열차칸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표 없어도 탈 수 있고. 그거를 특권이라고(연구참여자 6).

맞아요. 저분이 말한 것처럼 영예군인들이 “우리는 언 땅에다 배를 붙이고 군사 복무했어.” 이런 특례를 아주 그. 나한테도 시집 와!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연구참여자 2).

사회적인 제약이 많지 않다 보니 영예군인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영예군인들이 일반 다른 장애인들보다 체육 활동에 참여하기 더 수월하다. 영예군인들의 체육 활동은 영예군인 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예군인 공장에는 영예군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탁구대나 배구네트와 같은 체육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영예군인들의 대부분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지체 장애인이다 보니 지체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목 위주의 체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공장에 배구나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의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⁵⁾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영예군인에 대한 지위가 일반 주민들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제난과 권력의 3대 세습이라는 독재 정치체제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예군인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배급이 있다고 그 양이 매우 적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영예군인들은 그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주변의 일반주민을 착취하여 생계를 보장해 나가기도 한다.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예군인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이라는 말은 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2) 일반 장애인의 체육참여: 장애가 '장애'인 장애인

영예군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의 삶은 처참하다. 군과 당을 위해서 입지 않은 상처는 사회적 차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장애인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탈북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들은 영예군인이 아닌 장애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

35) 정지웅·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34호(2016), 155~180쪽.

다. 이들이 제시한 북한사회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비참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옆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주민이 많으며 특정 지역이나 병원에 장애인들을 몰아넣어 강제 수용을 하고 있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북한에서의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참담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부모라고 했을 때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게 병신자식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옆에 죽여요. 거기서 키워야 할 나이가 없으니깐. 그래서 내가 한국 와서 보니깐 별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깐.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깐. 옆에 죽여도 괜찮고.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요. 조그마할 때 없애 버려요(연구참여자 9).

그러니깐 태어났잖아요. 금방 태어났는데. 정신적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키웠는데 어찌다 보니깐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태어났는데 기형아 상태 수준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옆에놓거나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연구참여자 9).

일단 장애인들은 49 병원이라는 곳에 감금시켜놓아요.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깐 이게 미쳐 돌아가고. 그 49 병원에서는 제 친구 하나가 일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49병동에 조금 드나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신적으로 돈 사람들은 또 정신이 들었다가 뿐이지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이 세요. 그래서 일을 시키죠. 그런데 장애가 되가지고 49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 안에서 죽어도 돼요. 잠자다가 약을 콧 써 가지고

죽어도 그 본인 측에서 우리 자식 죽었다고 와도. 이런 인권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몰래 죽으면 아무래도 부모 측에서도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보고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은 ‘병신’, ‘꼴새’ 등으로 불리며 일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 안상권과 홍정숙의 연구³⁶⁾와도 일치한다. 언어가 그 사회를 표상하는 도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가 어떠한지 생각해볼 수 있다. 장애를 지칭하는 부정적 단어에 담긴 의미에서부터 사회적 차별이 시작된다. 차별이 만연하게 되면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장애인 인권이 더 악화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부정적 언어사용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많은 장애인이 굶어 죽게 되었고 이후 이들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게 되었다. 많은 주민이 자신의 생계문제에 매여 주위에 있는 이웃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둘 수 없었고, 북한 당국에서도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였다. 노동시간을 차등으로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장애인을 사회 속에 방치해둠으로써 주변의 무관심 속에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노동의 대가로 제공하는 배급의 양 또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심지어 영예군인 행세를 하면서까지 먹

36) 안상권·홍정숙,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244쪽.

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 환경에서 사고를 당해 죽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존재가 바로 북한에 거주 중인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 우리는 경노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노동에는 원래 젊은 사람들 8시간 노동제인데 이런 사람은 3시간, 4시간 노동제예요. 부류마다 달라서 노동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3시간이면 3시간만 일하고 쉬는거예요. 그리고 그 3시간은 현장에서 기계가 가동되면 나와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경노동도 잘 돌아갔어요. 장애인들도 먹고살았었는데 생활에 쫓들리다 보니깐 이제는 그것도 다 쉬다 보니깐 이제는 장애인들이 장사의 길에 뛰쳐 나서는거예요. 장애인들의 큰 도시같은 곳도 이제 얘기했지만, 가짜 영예군인들이 진짜 영예군인처럼 휩쓸려 가는게 있어요(연구참여자 6).

어떤 연구 참여자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장애인 체육에 대해 묻는 것조차 헛웃음이 나오는 일이라고 했다. 최고위층 이외 모든 북한 주민이 굶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체육 활동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북한 장애인들의 삶에서 체육 활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게 여기서 하는 말이지.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체육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저 웃죠. 지금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웃음거리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깐 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는 맞는데. 그냥 그 사람들 심리에서는 그냥 우스운 거죠(연구참여자 3).

북한에서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보장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애 주민들은 체육 활동에 참여하기는커녕 매일의 굶주림과 이웃들의 소외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체육 활동의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상태로는 양질의 체육시설을 건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운동선수가 입상하여 상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당에 바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입상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 시설 위주로 투자하여 입상한 사람들의 상금을 당비로 환수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장애인체육시설에 투자해 봐야 장애인들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여 당비를 낼 수 없다는 생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왜 중국처럼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을 투자하지 못하는가 하면 성성한 사람들도 체육협회에 가서 돈을 못 따오는데, 장애인인데 그렇게 가서 돈을 못 따오게 되면 국가가 아무리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장애인들은 금메달이라던가 그런 돈을 많이 못 따왔으면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연구참여자 1).

체육에서 벌어들이는 벌이가 대단하거든요. 체육 계통에서 체육인들이 국가에 가서 1등 했다 그러면 몇 프로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국가에 바쳐야 해요. 그러니깐 체육을 해서 국가에 기여하는게 많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도 체육을 키워야겠다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7).

북한이 사회주의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뿐이다. 소수 기득권층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할 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계층은 소외될 뿐이다.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탄압국가라는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장애인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에 소수의 장애인을 출전시키고 있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에 의하면 이렇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장애인들조차 최고위층의 장애인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올림픽이나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자신들이 참가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 북한 당국이 장애인에 대해 이중적 시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깐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면 북한에서 통신. 그거를 통제하니깐 세계 장애인의 날이 있다는 것도 거기 주민들이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다는 것도 더욱 몰라요 그러니깐 아는 사람은 북한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몇 사람만 알고. 만약 북한의 주민들이 세계의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다음에는 그 문제가 조금 다르고 그 생각하는 각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체육을 한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고(연구참여자 3).

북한에서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는 북한의 고위층의 장애인 자녀를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일반인들에게 운영되어야 사회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지 그게 고위급 간부 몇 명 자기 자식들 장애인이라고 들여다 놓고 서리. 이게 돈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아무 의미 없고 선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1)

최근 북한에서는 장애인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며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는 주변 국가에 대한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에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장애인 체육의 본질적인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영예군인만이 제한적으로 체육 활동을 즐기고 있을 뿐 영예군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은 체육 활동을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북한당국이 장애인들의 인권개선 홍보 도구로 체육이라는 문화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흐름에 발맞추어 남한 측에서도 북한 장애인 팀과 단일팀을 이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대회에서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의 남북한 통합은 통일 한국의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기반을 준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제가 체육교사였잖아요. 저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체육교사한테 있는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지 알아요? 저는 다 집어 치우고 학교의 명예만 걸었어요. 학교의 명예이자 내 명예예요. 학교의 명예이자 체육 선생님의 명예예요. 그러니 난 어느 대회에 나가더라도 꼭

이겨야한다는 그 욕망밖에 없어요. 나를 제쳐놓고 내가 있는 학교가 있구나. 이런 학교가 세구나. 이것 만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하자면. 거기다 장애인들을 끌어모아서 하자면. 거기다 장애인까지 넣어서 하자면. 피곤한 거죠. 학교 교원의 인원은 한 명인데 내가 그 장애인까지 하자면 아무것도 못하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지 교원은 없지. 그러면 진짜 꿈도 못 꾸는 것이지요(연구참여자 1).

북한의 학교현장에서도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일단,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의 수가 많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 속에 통합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다. 재북 당시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북한의 장애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다. 일단 학교의 체육 교사들은 지역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나가서 자신이 속한 학교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 학교의 이름이 높아져야 자신의 가치 또한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체육교육 시스템에서 장애학생은 부담일 뿐이다. 오로지 1등을 하는 게 목표인 상황에서 장애학생에게 운동기술을 가르쳐 대회에 함께 출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1등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체육의 현황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연

구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장애인 관련 문서를 수집하였으며 북한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체육참여 실태라는 주제로 북한 이탈주민을 모집하여 그룹면담을 시행하였다. 문헌자료와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장애인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 북한의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자 보호법의 제정 시기가 남한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고 법률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장애자 보호법에 포함된 장애인체육 관련 법 조항의 내용이 장애인들에게 체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긍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령의 제정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장애인들에게 체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공감대는 양측에서 동일하게 형성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대는 통일한국의 장애인들의 체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정치적 도구로 체육이 사용되던 김일성 시기보다는 체육의 대중화를 강조하던 김정일 체제에서 조금씩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국제장애인체육행사에 북한 장애인체육선수들을 등장시키면서 ‘체육강국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장애인체육을 인권탄압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선전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장애 주민의 생활체육보다는 장애인 엘리트 선수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장애인체육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는 점에서 남한의 장애인체육 현황의 특성과 닮았다. 특정 영역의 발전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은 해당 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 또한 동일함을 내포한다. 따라서, 통일된 한국 상황에서는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엘리트 스포츠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일반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장애인들의 체육참여실태는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은 영예군인들에게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문화제일 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북한 ‘장애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체육 관련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한 측에서 북한 측에 장애인 체육시설의 건립 및 체육 용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분야가 아니기에 남북한 교류의 긍정적인 채널로 작동할 수 있다.³⁷⁾ 이는 경직된 남북한 관계를 완화하고 통일 후에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장애학생들은 학교 체육현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열리는 학생체육대회들이 비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장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체육교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장애학생에게 체육을 지도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다 보니 체육교사는 입상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에서 장애학생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학생들의 체육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

37) 장용철,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연구,” 『북한학연구』, 제1호(2015), 71~102쪽.

한의 체제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할 만한 경제적 여력과 정치적 관심이 없으므로 이를 북한 당국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은 남한의 장애인 체육단체가 나서서 남북한 장애학생 친선 체육대회를 북한 당국에 제안하여 이를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대회가 개최되면 북한 측에서도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접수: 2월 27일/ 수정: 4월 7일/ 채택: 4월 9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신문

『로동신문』, 1994년 11월 10일.

『로동신문』, 1998년 2월 30일.

『로동신문』, 2013년 3월 4일.

『로동신문』, 2014년 1월 2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 개론』(서울: 법문사, 2005).

박영호·김수안·이금순·홍우택, 『북한인권백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2010).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서울: 집문당, 2009).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11).

2) 논문

김권일·박병도·이철환, “장애인 생활체육 문제점 분석 및 과제,” 『한국체육정책 학회지』, 제12권 3호(2014), 103~118쪽.

김동일·이태수·최종근, “북한의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장애자 보호 법의 내용과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제40권 1호(2005), 149~165쪽.

김석향,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제15권 1호(2011), 85~110쪽.

안상권·홍정숙, “북한 장애인의 삶과 특수교육에 대한 북한이탈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7권 3호(2016), 237~261쪽.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제25권 2호(2013), 1~28쪽.

- 이창희·박범영, “융합을 활용한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 운동개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1호(2018), 133~141쪽.
- 장용철,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연구,” 『북한학연구』, 제11권 1호(2015), 71~102쪽.
- 정지웅·이철수,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통권 34호(2016), 155~180쪽.
- 조창욱·구교만·오아라, “통합생활체육대회 참여 비장애인의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 및 통합체육 태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6호(2010), 635~642쪽.
- 최승권, “장애인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가치,” 『특수체육연구』, 통권 2호(2004), 1~11쪽.
- 허정필, “북한 ‘체육정치’의 전개 과정 연구”(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17).
-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6호(2015), 449~461쪽.
-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0권 3호(2015), 145~161쪽.

3) 신문

- 『데일리NK』, 2018년 1월 23일.
 『연합뉴스』, 2013년 8월 31일.
 『통일뉴스』, 2016년 2월 27일.

4) 기타 자료

- 김정민, “김정민의 길따라 발따라: 북한의 장애인, 인간대접 못 받는다,” 『북한』, 10월 호(1994), 121~133쪽.
- 장애인고용공단, 『한 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서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 정상화, “남북 장애인 교류를 위하여,” 『월간 북한』, 12월 호(2013).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3. 국외 자료

1) 단행본

Krueger, Richard A., and Mary A. Casey,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4).

Lincoln, Yvonna S., and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85).

2) 논문

Fern, Edward F., “Focus groups interview,”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1983), pp.122~216.

Morgan, David L.,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2(1996), pp.129~15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in the North Korea

Jo, GaRam(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YongHo(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resent state of Adapted Physical Activity(APA) in the North Korea(NK).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with nine NK defectors and related books, articles and online materials. The results were drawn by inductive category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In the result,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state of APA in the NK were notable. First, the legisl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y Protection Law’, which can be described as NK’s representative disability-related law, including contents related to APA, is rather outdated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s and is less specific in its contents. Second, interest of physical activ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gradually began to emerge during the reign of The Kim Jong Il system, which emphasized the popularization of physical activity rather than the Kim Il Sung

period, when physical activity was used just as a political tool. Currently, Kim Jung Eun system has been actively utilizing international disability sport events as a propaganda tool to wash down the disgrace of human rights, introducing NK disabled athletes to the international athletic event. Third, NK defectors' awareness for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NK is very frustrating. Physical activity was allowed on a limited basis for 'honorable soldiers'. For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NK are also being neglected in physical education in schools. As the student sports competitions held in NK are focused on non-disabled students,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naturally disregarded from teachers as well as education system itself.

Keywords: North Korea, Adapted Physical Activity, physical education, disability sports